

일반적인 보도절차에 어긋난 발표로 공직자의 명예를 침해한 사례

Frisk v. News Company

523A.2d. 347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 1986)

사실개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이었던 자가 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여 계심은 원고들에게 도합 500,000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도합 350,000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삭감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정신청을 하자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상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판결요지

지방의회 의장과 법무담당자가 법무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도시계획도를 변경하였다는 허위의 신문이기가, 척결한 보도전 조사없이 추측적인 비난 내지 비난의 암시를 내용으로 하여 효과적인 편집심사없이 보도되었음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경우, 현실적 악의에 의하여 발표된 것으로 볼 것이다.

판결이유

이 명예훼손 소송은 피고가 발행하는 신문인 New Castle News 의 1979. 5. 4. 과 5. 7.의 두 기사로 인하여 제기되었다.

Lawrence County 의 민사법원(Court of Common Pleas)에서 이 사건은 George P.Kiester 판사와 배심에 의하여 심리되었다. 사실심리는 1984. 10. 24. 개시되어 1984. 11. 9. 원고 Nick A. Frisk, Jr.에게 100,000 달러, Ricardi C. Gatto 에게 400,000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배심의 평결이 내려졌다. 이어서 1984. 11.10. 배심은 원고들에게 각 179,000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그 후 피고의 공판 후 구제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각 50,000 달러로 삭감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삭감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정신청을 하자항소심은 기각 하였다. 이에 피고는 상소를 제기하였다.

Kiester 판사는 이 소송의 기초가 된 관련사실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Nick A. Frisk 와 Ricardi G, Gatto 는 News Company 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NewCastle News 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된 기사가 보도될 당시인 1975. 5. 에 Gatto 는 펜실베이니아주 Ellwood City 지방의회의 의장이었고, Frisk 는 법무담당자이었다. 위 기사는 Frisk 변호사가 소유한 Ellwood City 내 부동산 도시계획에 관한 것인데, 피고사 소속 기자인 Dan Callahan 이 이를 작성하였다. 위 기사는 Callahan 이 1979 년 5 월 3 일 Ellwood City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로서 당일 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Roy Meehan 및 Martin Kovach 와가진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1979년 5월 4일자 기사는 『도시계획도를 주무르는 공무원들』이라는 제목으로, 1979년 5월 7일자 기사는 Frisk의 부동산 사진과 함께 「Frisk의 부동산을 포함한 세계의 도시계획도변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위 각 기사는 의심할 여지없이 Gatto와 Frisk가 1976년 Frisk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Ellwood City의 도시계획도를 변경한 것에 연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당시 예비선거가 1979년 5월 15일로 예정되어있었고, 특히 Kovach, Meehan과 Gatto는 시의회 의원선거에 출마중이었다. Gatto는 위 보도내용 때문에 낙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증거들에 의하면 1976년 7월 Frisk와 14명의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그 변경 요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여러 실무적인 도시계획도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Frisk가 요청한 도시계획의 변경요청은 위원회에 의하여 거절되었고, 추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채택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도시계획 예정도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5월 4일자 기사를 읽는 Frisk는 그날 저녁 Callahan과 New Castle News의 편집부장인 Vosburg에게 전화를 걸어 위 기사에 실린 비난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위 기사의 취소와 자신의 입장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Frisk는 지방의회 건물에서 5월 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Callahan을 만났다. Frisk 변호사는 Callahan에게 그 자리에서 위 기사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Callahan은 Frisk와 다음날인 5월 5일 토요일 오전 09시 그의 법률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Callahan이 나타나지 않았다. Frisk는 Callahan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단지 편집부장인 Vosburg가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허위 추측 보도는 피고에 의하여 1979년 5월 7일 다시 보도되었다. Frisk는 피고에게 부인의 뜻을 전하였으나 이는 보도되지 아니 하였다. 1979년 5월 8일 화요일 Frisk는 1976년 이와 관련된 지방행정 담당자이던 Thomas A. Stoner로부터 당시 실무상 작성된 도시계획도와 그 변경에 관한 진술서를 확보하였다. 위 진술서는 1979년 5월 9일 내지 5월 10일 New Castle News에 제공되었으나, Stoner의 진술도, Frisk나 Gatto의 부인도 보도되지 아니하였다. 공판에서 원고측 증인들은 위 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평판이 악화되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측 증인들은 1979년 5월 4일 이전에 이미 원고들의 정직성 및 성실성에 관한 평판은 좋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Frisk나 Gatto 또는 그 밖의 누구도 도시계획도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먼저 피고의 상소를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는 획기적인 판례인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u.S.254(1964)사건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원고들이 「공적인 인물」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판례에서 해석된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제 1 조에 비추어 피고의 명예훼손적인 보도가 현실적 악의에 의하여, 즉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행하여 졌다는 점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최근 미국대법원은 Bose Corp. v. Consumers Union of United States, 466u.S.485(1984)사건의 판결에서 「원고의 (현실적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발표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주관적으로 발표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것을 요한다.」 라고 판시 하였다.

더우기 위 법원은 St. Amant v. Thompson, 390U.S. 727(1968) 사건의 판결에서 「부주의한 행동은 통상 합리적인 사람이 발표하였거나 그 이전에 조사하였을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는 피고가 그 발표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허용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발표하였다고 입증함으로써 진실 또는 허위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현실적 악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다.

상소법원으로서 우리는 이 사건과 같은 성질의 사건에 있어서 미국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금지된 어떠한 침해도 피하기 위하여 현출된 모든 증거를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에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의하고 있다.

우리는 이 소송에 나타난 2,000 페이지가 넘는 공판정에서의 증언 기록을 일일이 검토하였다. 원심법원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상황을 정확히 상술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명예훼손적인 보도를 그 허위성을 알면서 발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피고가 그 허위성을 부주의 하게 무시 하고 기 사를 발표하였다. 고 인정할 증거는 명백하고 확실하다.」 라고 실시하고 있다.

1979년 5월 4일 기사의 첫 문장은 「Ellwood City 지방위원회 위원장, Rick Gatto 는 1976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법무담당자인 Nick A. Frisk 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변경된 도시계획도를 주었다」 라고 기술하여 그 논조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Frisk 와 Gatto 에게 위법한 행동의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는 5월 4일 기사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고, 이어진 5월 7일 기사에는 더욱 더 확대하여 주장되었다. 이미 공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Frisk 도 Gatto 도 어떠한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실무적 지도의 변경은 이와 관련된 지방행정담당자인 Thomas Stoner 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5월 5일과 5월 7일의 보도는 (1) 적절한 발표이전의 조사의 완전한 결여, (2) 전적으로 추측에 의한 비난과 비난의 암시, (3) 효과적인 편집심사의 활용 내지 채택이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도절차에서 명백하게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진실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졌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평결에 반대되는 판결의 신청의 기각결정을 확인한다.

다음 징벌적 손해배상이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는 Daley v. John Wanamaker, Inc., 317pa. Super, 348(1983)사건의 판결에서, 과다한 평결액의 감축을 명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 범위내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에서 평결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감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원심법원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보도절차에서 심하게 벗어났음에 비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내려진 판결은 적절하다. 보상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법원의 배심에 대한 법률설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법률설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피고가 과실로 또는 명예 훼손적인 보도를 발표함에 있어서 허위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그의 평판의 손상과 함께 그러한 보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갈등, 심적 고통과 모멸감을 겪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가 허위이고 명예훼손적인 보도를 그것이 허위인 줄 알면서 또는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의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발표할 경우 원고가 감정적 갈등, 심적인 고통과 모멸감을 겪었다고 추정되므로 원고의 그러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명함에 있어 원고는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법원의 위와 같은 설시는 모든 실질적인 점에서 추정적 손해배상은 책임이 「현실적 악의」에 기한 경우에도 헌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의 미국대법원의 *Gertz v. Robe 퍼 Welch, Inc.*, 418u 5. 323(1974)사건의 판결의 설시에도 완전히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보상적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당원은 *Baird v. Dun &Bradstreet*, 446pa. 266(1971) 사건에서 "평결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하는 새로운 공판의 허용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 범위내에서 속하고 평결이나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명백한 재량의 남용이나 법률의 착오가 없는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이를 좌우할 수 없다."라고 설시 하였다. 이 사건의 사실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평결된 손해배상액은 과도하거나 감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주의 깊게 피고의 준비서면과 인용된 증거 들을 살펴 보았으나 사실심법원이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관계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소는 이유 없다.